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가단50435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조세형, 유태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청

담당변호사 김민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오선

변 론 종 결 2021. 4. 16.

판 결 선 고 2021. 5. 28.

주 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9. 11. 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8,1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1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2020. 10.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9.

10. 21.’은 ‘2019. 11. 4.’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26.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197199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7. 27.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37,450,067원 및 그 중 10,909,848원에 대하여 2008. 7.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C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8. 8. 17.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은 2019. 10. 21. 사망하였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C, 피고, E, F이 있었다.

다. 그런데 C, E, F과 피고는 2019. 11. 4.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피고는 2019. 11.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4.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채무자 망인 및 근저당권자 G조합(변경 전 상호는 ‘H조합’이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19. 12. 17.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망인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마. 또한 2019. 12.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3,600,000원, 채무자 피고 및 근저당권자 G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한편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인 1/4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그 실질이 상속의 포기로서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그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포기로 볼 수는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1/4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자신이 어머니인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망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는 그 작성자들이 피고와 형제자매관계에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4.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채무자 망인 및 근저당권자 G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는 후인 2019. 12.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3,600,000원, 채무자 피고 및 근저당권자 G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1/4 지분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가액배상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결국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G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11. 26.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금액은 141,920,000원인 사실(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같은 가격일 것으로 추인된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96,000,000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69,32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1/4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18,150,000원[= 72,600,000원(= 위 141,920,000원 - 위 69,320,000원) × 1/4]이 된다. 또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날이자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인 2020. 2. 14.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53,218,57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53,218,570원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1/4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18,150,000원 중 적은 금액인 18,1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18,1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원

목 록

1. 중남 부여군 대 379㎡

2. 중남 부여군 지상전물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지붕 2층주택

1층 96.03㎡

2층 29.7㎡. 끝.

